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3년 10월 11일

신한 BNPP 탑스 일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판매가격 적용 기준일 정정
- 2 문구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판매가격 적용 기준일 정정 : 제25조 (판매가격)</p>	<p>제25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25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문구정정 : 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생략) 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(신설)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,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2. 문구 정정 : 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	<p>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3년 10월 11일

신한 BNPP Tops JAPAN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판매가격 적용 기준일 정정
- 2 문구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판매가격 적용 기준일 정정 : 제25조 (판매가격)	제25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25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2. 문구정정 : 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생략) 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(신설)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,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2. 문구 정정 : 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	제32조 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